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
REPUBLIC OF KOREA

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	2008. 6. 27(금) 배포시부터		
배포일시	2008. 6. 27(금) 08:00	담당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
담당과장	최영록(2150-4110)	담 당 자	배정훈 사무관(2150-4111)

제목: 2008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

□ 지난해 말 또는 금년 초 개정된 세법 및 세법시행령 중 **금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내용**은 아래와 같음

□ 주요 내용은 **노인·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, 세원투명성 강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, 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임**

<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세제 주요내용>

1 노인·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지원

○ **노인장기요양보험료** 중 근로자부담분을 **보험료 소득공제** 대상에 추가하고, **사용자 부담분**은 **필요경비**로 허용

○ **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**로 지출한 **본인 부담금**은 **의료비 소득공제 대상**에 포함

○ **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**하는 **요양서비스**에 대해 **부가가치세 면제**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.7.1 시행

② 주세 감면(50%) 대상 전통주의 범위 확대

○ 전통주 소비진작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**50% 주세감면** 대상을 **전통주중 과실주**에 한하던 것을 모든 **전통주**로 확대

2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

①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(건당 5,000원) 폐지

○ **건당 5,000원 미만의 거래**에 대하여도 **현금영수증을 발급**하도록 함 **(동 거래 금액**에 대해서는 **소득공제도 허용)**

② 농업용 면세유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

○ 농업용 면세유 구입시 **면세유류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**

* 현재는 1만ℓ이상 사용 농민만 면세유카드로 면세유 구입

③ 금지금*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부토록 특례를 신설하고 **고금*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(3/103) 허용**

* 금괴, 골드바 등 원재로 상태로서 순도가 99.5% 이상인 금
*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58.5%(14K) 이상인 금

④ 과세유흥업 등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의무화

⑤ 공업용 소금에 대해 **부가가치세 과세전환**

3 납세 편의 제고

①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※ '08.10.1부터 시행

○ '08.10.1일부터 **개인**이 납부하는 **200만원** 이하의 **소득세, 부가가치세, 종합부동산세 등은**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

② 소규모 제조맥주(Micro Brewery) 판매장소 제한 완화

○ **최종 소비자**에게 판매하는 경우 **외부반출(take-out)**을 허용

<별첨> 2008.7.1부터 달라지는 세제의 구체적 내용

기획재정부 대변인

2008년 7.1부터 달라지는 세제의 주요내용

1. 노인·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

1.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지원

(1)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· 필요경비 허용(소득법§52)

현 행	개 정
□ **보험료공제**	□ **보험료공제 대상 추가**
○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보험료	
○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	
	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**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**
□ **필요경비 인정**	□ **필요경비 항목 추가**
○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	
	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**사용자 부담 보험료**
	*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.2%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분담

<개정이유> 노인장기요양보험*('08.7.1) 시행 지원

* 고령 · 노인성 질병 등으로 **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·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**하는 사회보험 제도

<적용시기> '08.7.1이후 지출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(2)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의료비 공제 및 장기요양기관 제공용역의 부가세 면제(소득영 §110①, 부가영§29)

현 행	개 정
□ **의료비 공제 대상**	□ **의료비 공제 대상 추가**
○ 진료 ·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	
○ 의약품 구입비 등	
	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중 **본인부담금***
	* 재가급여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 시설급여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
□ **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**	□ **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 추가**
○ 의사 · 간호사 · 약사 · 수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	
○ 장의 · 화장용역,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용역 등	
<추 가>	○ **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**

<개정이유> 노인장기요양보험('08.7.1) 시행 지원

<적용시기> '08.7.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2. 주세감면(50%) 대상 전통주의 범위 확대(주세영 §21의2)

현 행	개 정
□ 전통주에 대한 주세 **감면(50%) 대상**	□ 주세감면(50%) 대상을 **전통주 전체로 확대** * 「주세법」 개정('07.12)으로 주세감면 대상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하고, 감면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
○ 과실주 : 직전년도 **500㎘ 이하** 제조자(출고기준)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中 **처음 200㎘**에 한정	○ 발효주 : **(좌 동)**
※ 전통주의 구분 발효주: 농민주(복분자주 등), 민속주(한산소곡주 등) 증류주: 더덕주 등, 전주이강주 등 * 과실주는 발효주의 일종	○ 증류주 : 직전년도 **250㎘ 이하** 제조자(출고기준)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中 **처음 100㎘**에 한정 ※ 증류주는 발효주보다 세율이 높고 고도주임을 감안

〈개정이유〉

□ 전통주 주세율 인하를 통해 **전통주의 소비진작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**

○ 다만, 감면 대상을 **소규모 제조자**로 제한하여 **WTO 내국민대우**(National Treatment) **위반 소지를 축소**

〈적용시기〉 2008.7.1.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

2.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

1.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(소득령§210의3 등)

현 행	개 정
□ **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** ○ 5,000원	○ **최저금액기준 폐지** - 다만 **가산세, 포상금**대상 금액 기준은 **5천원 유지**

〈개정이유〉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'08.7.1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

2. 농업용 면세유 카드제 전면 도입(농림특례규정 §16)

현 행	개 정
□ **농업용 면세유류 전자카드 또는 종이쿠폰을 통해 구입** ○ 1만ℓ이상 사용자 : 전자카드 ○ 1만ℓ미만 〃 : 종이쿠폰	□ **면세유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** ○ 모든 농민: 전자카드 (종이쿠폰 폐지)
□ **면세유 전자카드 및 종이쿠폰의 사용지역 제한 없음** <신 설>	□ **면세유 전자카드의 사용지역을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**
	□ **면세유판매업자 지정제도 도입** ○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**농협중앙회에 신청하여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**받아야 함 ○ 면세유판매업자가 **부정유통 개입시 지정을 취소**하고 **3년간 판매중단**

〈개정이유〉 전자카드제 전면시행, 사용지역 제한 등을 통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

〈적용시기〉 '08. 7.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3. 귀금속산업 탈세방지

(1) 금지금 매입자납부 특례 신설(조특영 §106의9)

현 행	개 정
<신 설> *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(10%)를 거래징수하여 납부	□ **금지금 매입자납부 특례 도입** ○ 금지금 사업자간 거래시 **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에 매입자가 직접 국고에 납부**

<개정이유>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(도주)하는 탈세(소위 "세금폭탄") 현상을 방지

<적용시기> '08. 7.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

(2)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(조특영 §105의5)

현 행	개 정
<신 설>	□ **금은방 등 금사업자가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/103 세액 공제** ○ 고금 :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58.5%이상인 금(14K, 18K, 24K) ○ 한도 : **고금 매출액의 80% 한도** ○ 일몰기한 : **'09.12월 (2년)**

<개정이유> 고금거래의 **양성화 유도**를 통한 **세원투명성 제고 및 귀금속산업발전 지원**

<적용시기> '08. 7.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

4. 과세유흥업 등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의무화(부가영§7)

현 행	개 정
□ **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** ○ 사업허가·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○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	□ **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에 추가** (좌 동) ○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* 도·소매업의 경우 자금출처소명서 * 금괴,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.5% 이상인 금

<개정이유> 사업자등록시점에서 **명의위장 사업자**를 **구별**해냄으로써 명의위장을 통한 **세금 탈루**를 **원천적**으로 **방지**

<적용시기> '08.7.1.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5. 공업용 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(부가영 §28)

현 행	개 정
□ 소금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	□ **소금중 공업용은 과세로 전환**

<개정이유> 염관리법의 개정('07.12.27)으로 **소금의 식용·공업용 분류가 명확해짐에 따라 공업용소금을 과세 전환**

<적용시기> '08.7.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3. 납세편의 제고

1.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 도입(기본영§26의2)

현 행	개 정
<신 설>	□ **대상세목** ○ **개인**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, 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개별소비세, 주세 - Sur-tax(교육세·농특세) 포함 □ **납부세액 한도 :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** □ **납부방법** ○ 국세**납부대행기관**(금융결제원, 국세청장 지정기관)을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 □ **납부대행 수수료** ○ 국세청장이 승인토록 하되, 수수료 상한은 1.5%

<개정이유> **대중세목**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납부 제도 도입

<적용시기> '08.10.1.이후 신고·납부분부터 적용

2. 소규모 제조맥주(Micro Brewery) 판매장소 제한완화 (주세영 별표 3의 4)

현 행	개 정
□ **소규모 맥주 판매방법** ○ 제조자가 **영업장 내**에서 **직접 음용하는 고객**에만 판매 < 추 가 >	□ **판매방법 제한 완화** ○ **최종 소비자**에 대한 직접 판매에 대하여 **외부반출 허용** ○ **동일 제조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대한 외부반출 허용**

<개정이유>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**규제 완화** 및 다양한 맥주에 대한 **소비자의 접근성 확대**

* 소규모 맥주(Micro Brewery)
 - 소규모 맥주는 일명 하우스 맥주라고도 하며, 영업장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맥주임
 - 월드컵 개최, 관광 서비스산업 진흥 등을 위해 2002년부터 도입

<적용시기> 2008.7.1.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